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 상위법이 개정 및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항목의 삭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수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총 202건 중 147건 개정
(증명수수료 31건, 일반행정관계수수료 116건)
- 삭제 : 143건
- 변경 : 4건

3. 검토의견

-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147건 중 143건은 삭제이고, 4건은 변경사항입니다.
그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폐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자체가 삭제되었거나 타 기관으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었거나 다른 증명으로 같음하거나 기관간의 협조로 같음하는 경우도 있고, 상위법령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며, 그 대상사무도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대부분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 여부는 수수료 징수의 대상사무와 위임조례의 성격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28조 제1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28조 제2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0조 제1항).
-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1항)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제2항)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그 대상사무라 할 수 있겠으며, 동법 제130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한 것 역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고유사무의 경우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단체위임사무의 경우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밖에는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 한 상위법령을 대신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보충 법령」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효시기, 내용, 효력상실 등은 상위법령을 전제로 하고 위임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규정할 수 없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소멸한 때에는 위임조례도 개정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본 조례를 개정조례안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 들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폐는 이미 오래 전('93. 12. 21에 개폐된 경우도 있음)에 행해졌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동안 우리의회가 수 차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오다가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조례는 상위법령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소멸한 때에는 위임조례도 개정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만, 당해 사건을 규정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실무에 있어서 일반적 관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례라 할지라도 외형상 존재하고 있다면 실무자의 오판으로 행정실무에 적용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는 없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요구안 22면에서는 현행조례와 개정안을 대비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와 개정안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참조 1).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5조, 제16조

(참조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 ----- ----- ----- -----